

2010. 2. 3. (수) 10:00

제1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거창군 읍·면농지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거창군 읍·면농지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 15.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27.(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10 - 4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 또는 면에 설치·운영토록 위임된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법」의 개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21호)으로 폐지됨에 따라 군 관련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농지관리 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정비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우리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개정 법령과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읍·면에 설치·운영토록 위임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정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 종전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조치토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